

Bolero Bill of Lading(BBL) 실용화에 관한 연구

吳 元 碩*

-
- I. 서론
 - II. Bolero 의 조직과 기능
 - III. BBL의 권리이전과 진정성 확보
 - IV. BBL과 관련된 다른 무역계약과 전자문서
 - V. BBL의 실용화에 따른 문제점
 - VI. 결론
-

I. 서 론

Bolero(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시스템은 국제물품 매매, 운송 보험 및 결제 등 무역거래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종이서류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로 대체하는 상업적 시스템이다.

1990년에 제정된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이 운송인과 은행들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CMI 규칙상 운송인이 키소지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운송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은행도 이 제도의 보안측면(security aspects)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화하는데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1994년 EU와 은행, 운송인, 전기통신업체 및 국제거래를 하는 주요기업으로 컨소시움을 형성하고 무서류거래에 관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Bolero란 시스템이 생겨나게 되었다.¹⁾ 그 과정에서 Richard Butler가 중심이 되어 1997년과 1998년에 18개²⁾ 재판관할권에 대한 광범위한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D. Jones, "Bills of Lading Go Electronic," (1994) 12 *Banking World* 38.

연구검토를 거쳐 실행가능성을 확인한 후 1999년 9월 27일 처음으로 상업적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SWIFT와 TT Club의 합작회사인 Bolero International Ltd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전통적인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자문서의 사용에 따른 무역거래비용의 절감효과이다. UN통계에 의하면 무역거래비용의 7%가 서류발행비용으로 전세계가 이에 지출하는 비용이 4,200억 달러에 달한다.³⁾

둘째는 전자문서의 사용은 자료의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는 안정성 확보의 효과가 크다. 전통적 서류를 사용할 경우 서류의 이동에 따른 자료의 재입력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장거래의 경우 이러한 오류나 누락은 서류불일치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자문서의 경우 자료의 재입력이 불필요하므로 이러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는 전통적 서류의 서류전달에 따른 지연을 전자문서의 경우 예방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자료의 이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연에 따른 업무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직내부에서 Bolero 시스템의 활용에 따른 이점이 수없이 많다. 즉, 물품공급업체관리의 효율화, 사기나 보안저해위험의 감소, 고객서비스의 향상 및 재무관리의 효율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Bolero 시스템의 기능이 BBL을 통하여 달성된다. BBL은 'Bolero Bill of Lading'의 약자이지만 이것은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를 포괄한다. 논자가 BBL을 논제로 삼은 이유는 Bolero 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한 Rulebook의 많은 조항이 선하증권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자는 본고의 제2장에서 Bolero 시스템의 기능과 조직을 검토한 후 제3장에서 BBL의 권리이전과 진정성 확보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BBL사용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른 무역계약에서 전자문서의 사용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국제무역이 전자문서로 이행되기 위

2) Belgium, Columbia, France, Germany, China, H.K., Holland, Italy, Japan, Korea, Norway, Singapore, Spain, Switzerland, Taiwan, UK, U.S.A.

3) R. Caphehorn, "Bolero.net-The Global Electronic Commerce Solution for International Trade,"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1999. Nov. P.421.

해서는 운송계약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무역관련 계약이 전자적으로 체결되고 이에 따른 문서가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되고 전달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BBL의 실용화에 따른 문제점과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BBL이 시행에 들어간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도 무역관련자들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며 이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고찰한 논문이나 저서가 없다. 비록 INCOTERMS 2000에서 이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 실무종사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자는 본고를 통하여 무역 거래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BBL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 그간의 국내외 논문과 Rulebook을 주로 참고하였다.

II. Bolero의 조직과 기능

BBL에 관한 고찰에 앞서 권리등록업무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Bolero시스템의 조직과 기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Bolero는 2개의 분리된 조직을 갖고 있다. 즉, Bolero International Ltd(BIL)과 Bolero Association Ltd(BAL)이다.

BIL은 SWIFT 와 TT Club이 50:50 비율로 출자한 합작투자회사이다. BIL이 바로 Bolero시스템의 운영을 맡고 있다. BIL이 CMI규칙에서 운송인이 수행하던 개인키의 발행과 취소 및 권리자의 확인업무를 중앙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한다.

반면 BAL은 Bolero시스템의 모든 사용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조직에 속한 각자는 BIL과 “운영서비스계약”⁴⁾(Operational Service Contract)을 체결한다.

이 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며 분쟁발생시 영국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⁵⁾

4) 사용자와 BIL과의 표준양식에 따른 계약으로 때때로 변경될 수 있다. (Bolero규약집, 1.1(40)), 이를 계약서는 www.bolero.net으로부터 downloading이 가능하다.

5) Bolero규약집, 2.5(2), 2.5(3); 영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이유는, 첫째 common law가 대부분의 사법권역의 법체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법이라는 점, 둘째, 영법이 전자적 통신방법에 호의적 성향을 지녔다는 점, 셋째는 영법이 많은 국제계약의 준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문제가 Rulebook의 불옹이나 위반과 관련될 경우 영국법원이

사용자와 BAL 사에 가장 중요한 계약내용은 Operational Service Contract 와 Bolero Rulebook⁶⁾에 나타난다.

이 가운데 Rulebook과 이에 부록으로 첨부된 “운영절차”(Operational Procedures)는 전자문서의 교환에 관한 법적토대를 제공하고 사용자간, 그리고 사용자와 BAL간 법률적 합의내용으로 된 多者間의 規約이다. Rulebook은 모든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약이며 사용자는 누구나 Bolero시스템의 사용허가를 받기 전 여기에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의 의미는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이며 Bolero의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인정하겠다는 동의의 표시이다.

Rulebook의 중심내용은 BBL의 생성, BBL의 권리, 점유이전 운송계약의 경개(更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또한 BBL의 관련당사자 즉 송하인, 운송인, 소지인, 질권자, 수하인 등의 기능과 권리 뿐만 아니라 BBL사용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물품이 매매될 경우 종이선하증권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Rulebook의 기본전략은 전통적 선하증권하의 당사자의 권리가 전자문서하에서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며 기존의 계약관계를 가능한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법률적 장애가 있을 경우 종이문서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Bolero.net 환경하에서 이를 복제하려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III. BBL의 권리이전과 진정성 확보

1. BBL의 의의와 권리이전

BBL은 'Bolero 선하증권 원문(BBL TEXT)과 그것에 관련되는 권리등록기록>Title Registry record)를 합친 개념이다. 여기서 선하증권 원문은 전통적 선하증권의 그것과 유사하며 권리등록기록은 권리등록>Title Registry) 시스템

배타적 관할권을 갖지만 다른 문제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선택이 우선한다.

6) Rulebook은 Bolero시스템에서 생기는 사용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것이다. (Bolero규약집 1.1.(46))

7) Bolero규약집, (3.1-3.5)

8) "Title Registry"는 BBL의 소유자와 이전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BBL의 상태를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BIL에서 이를 운영한다. Bolero규약집. 1.1(53)

에 보관된 구조화된 정보(structural information)이다.

BBL도 전통적인 유통가능 선하증권과 같이 운송 중 물품의 권리를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BBL도 전통적인 선하증권과 같이 상관습에 의하여 유통성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CMI의 “Interchange Agreement”에 해당하는 다자간 계약인 Rulebook의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BBL은 송하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될 때 권리등록시스템에 등기된다. 운송인의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이 확인된 후 송하인은 권리등록시스템으로부터 선하증권의 등기에 관한 통보를 받는다. 그 후 BBL소지인의 변경시 권리등록시스템은 운송인의 대리인의 기능을 한다. 현재의 소지인으로부터 변경통지를 받으면 등록시스템의 현재 소지인의 권리는 취소되고 그 권리는 새로운 소지인에게 이전한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모든 당사자가 Rulebook에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⁹⁾

Rulebook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이전의 메카니즘은 更改(novation)와 새지주승인(attonnement)의 법리에 의한다.¹⁰⁾ 更改는 기존의 양당사자간 계약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기존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와 새로운 제3자가 된다. 즉, 매도인이 BBL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때 매도인과 운송인간의 최초의 계약은 소멸되고 운송인과 매수인간의 새로운 운송계약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생기게 된다. 새지주승인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합법적인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겠다는 학약이다. 즉, 운송인은 BBL의 새로운 소지인에 대한 통보를 받고 그를 새로운 소유자로 승인하며 물품을 그의 지시에 따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소지자는 24시간 내에 자신이 새로운 소지자임을 승낙한다는 것을 권리등록시스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론 소지자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이를 통보한 것으로 추정한다.¹¹⁾

9) Rulebook Part 3, 3.5.1. ; R. Burnett, *Law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2nd ed., The Federation Press, Update-Feb. 2001, pp. 89~90.

10) 계약양도의 법리로 ‘Novation’의 원리를 채택한 것은 대륙법계를 포함한 많은 사법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면양도(written assignment)의 요건을 피하기 위함이다. 영법하에서도 전통적 선하증권의 양도방법은 COGSA(1992)에 정해져 있으며 이것은 BBL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ulebook의 ‘assignment’은 운송인의 대리인의 기능을 하는 Bolero.net에 의하여 이행된다.

11) R. Burnett, *op. cit.*

한편 BBL도 유통가능한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전통적 선하증권과 같이 담보물권이 될 수 있다. 담보물권의 확보는 이전 소유권자의 파산이나, 물품을 실제로 점유한 자의 불법매매나 불법처분시 적법한 양수인으로 하여금 물품에 대한 해석적 점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나 또는 청산인의 청구권으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BBL의 해석적 인수도 가능하다. 담보은행은 자신이 지급한 대금에 대한 담보확보를 위하여 BBL의 담보권자로 권리등록시스템에 등기한다.¹²⁾ 이러한 권리등록방법을 통하여 Bolero.net도 화환신용장거래의 보편적 관습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BBL도 전통적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3가지 기능, 즉 권리증권의 기능, 운송계약의 증빙서류, 화물의 영수증의 기능을 한다. 권리증권의 기능에서 전통적 종이 선하증권은 배서, 양도를 통하여 권리를 이전하는데 반하여 BBL은 BIL이 운영하는 권리등록시스템에 권리의 등록과 취소 등을 통하여 권리를 이전한다. CMI Rules의 전자식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개인키¹³⁾의 발행과 취소를 통하여 등록기관의 기능을 하는데 반하여 BBL은 공신력 있는 독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소지인의 권리를 기록하고 변경하므로 등록과정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 BBL의 진정성 확보

Bolero시스템의 사용자들 사이에 문서의 전송은 중앙신호처리소(Core Messaging Platform;CMP)를 통하여 이행된다. CMP에 문서가 전송되면 서명이 되었는지 기술적으로 올바른 형태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권리등록시스템에 기록하고 송신자에게 전송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통지한다. Rulebook의 부록에 첨부된 "운영절차"(Operational Procedures)에는 CMP에서의 문서처리절차와 권리등록시스템의 권리등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¹⁴⁾

12) R. Caplehorn, *op. cit.*, p. 423.

13) CMI Rules 의 개인키는 권리이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BBL의 Title Registry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BBL의 암호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키와 공개키는 CMI Rules의 개인키와는 성격을 달리하며 이것은 전자문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서명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14) 제2조 "Core Messaging Platform"에서는 문서의 구성, 문서의 흐름, 사용자의 확인 및 문서의 진정성, 동봉서류 및 문서의 암호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Title Registry"에서는 BBL의 성격, 역할, 상태, 유형, 운영, 등록보고와 통지

어느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전자문서를 보내거나 또는 BBL을 권리등록시스템에 등록하거나 BBL의 권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자문서는 CMP를 통하여 사용자의 확인과 문서의 真正性을 확인받아야 한다.¹⁵⁾ 그리고 CMP가 이를 권리등록시스템에 보내면 이곳에서 정보가 기록된다.

권리등록시스템은 매 BBL마다 “권리등록기록”(Title Registry Record)이라는 데이터베이스목록을 유지하고 이 목록에는 BBL의 권리소지자의 ID가 기록되어 있다.

만약 “권리등록기록”에 기록된 data를 변경할 권리가 있는 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하여 CMP를 경유해서 권리변경지시를 할 수 있다.

전통적 선하증권과 같이 BBL도 그것의 발행시로부터 물품이 최종 인도될 때까지 여러 절차를 경유하게 된다. Bolero시스템의 이용자들은 CMP에 이들 절차에 관한 요구사항이 내포된 전자문서를 보내며 CMP는 이러한 정보를 권리등록시스템에 보내게 되고 그 결과 “권리등록기록”에 기록된 data 가 바뀌게 된다.

모든 전자문서는 발송되기 전 송신자의 디지털 서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서명이 증명된 경우에만 CMP로의 전송이 가능하다. 수신자가 자신에게 보내온 전자문서의 真正性(authenticity)과 無缺性(integr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대칭 암호화방식(non-symmetric encryption) 또는 공개키 암호화방식(public key encryption)을 사용한¹⁶⁾ CMP에 의하여 확인된다. 즉, 이 시스템의 각 사용자는 한쌍의 키, 즉 자신만이 알고 있는 개인키(private key)¹⁷⁾와 모든 사용자들에게 알려진 공개키(public key)를 BIL로부터 부여받는다. 어느 한 사용자가 자신의 전자문서를 자신의 개인키로 디지털방식으로 서명하여 CMP로 보내면 이에 상응하는 공개키로 그 문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개인키와 수리적으로 상응하는 공개키만이 서명된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 결과 수신자는 그 문서가

및 BBL원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5) F. Kruse,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Swedish Club Letter*, 1999. 3, p.18.

16) D. L. Gripman, "Electronic Document Certification ; A primer on the technology behind digital signatures," *Journal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7 No.3 (1999) pp. 773~778.

17) 개인키는 신용카드 크기의 스마트카드에 저장된 숫자로 디지털서명을 하는데 사용되며, 공개키는 디지털서명을 증명하려는데 사용된다. 또한 역으로 개인키가 공개키가 암호화하는데 사용되고 공개키가 복호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정의 송신자로부터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신자가 수신문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키가 문서의 송신자에 의해 발행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인증시스템¹⁸⁾이 바로 BIL의 권리등록시스템이다.

BBL의 권리등록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권리변경을 위하여 CMP를 통과할 때 사용자의 동일성과 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 디지털서명이다. 즉 사용자는 해쉬함수(Hash function)¹⁹⁾를 통하여 문서를 일정한 길이로 압축한 “수학적 축약물”(mathematical digest)로 만들고 이를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문서에 첨부하면 이것이 바로 디지털서명이다. 이 때 문서를 전송받은 수신인은 송신자의 개인키와 한쌍으로 된 공개키로 문서에 첨부된 디지털 서명을 원래의 축약물로 복호화하고, 평문을 해쉬함수로 축약하여 복호화된 축약물과 비교하여 같은지를 확인한다. 비교 결과 양 축약물이 동일한 경우 문서가 전송과정에서 변조되거나 누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를 전송한 자도 송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CMP는 디지털서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개인키와 공개키의 조합이 가입자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증기관이다. 사용자가 BIL과 체결하는 운영서비스계약은 사용자가 이에 어떤 오용(misuse)이 있었다면 이를 책임질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서의 전달과정에 비대칭암호화방식이라는 진정성과 무결성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외에 BBL에 관한 Rulebook에는 Bolero.net가 생성한 문서의 증거력을 인정하기 위한 다음의 조항을 두고 있다.²⁰⁾

첫째, 문서(writing)의 법적 요건은 디지털화된 borelo.net 문서(message)로도 충족된다.

둘째, 디지털서명은 육필서명과 동일하게 사용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셋째, 전자문서는 법원이나 중재법정에서 그 내용에 관한 최우선 증빙서로 인정된다.

넷째, 사용자는 bolero.net를 통한 거래나 진술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유효성에 도전받지 않는다.

18) BOLERO측은 이 인증시스템을 IDENTRUS라는 국제적 금융기관 중심의 인증업체를 통해 구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19) 해쉬함수란 특정의 글자에 고유의 값을 부여하여 이를 합산할 수 있는 계산법(algorism)을 지칭하고 이렇게 합산된 값을 해쉬축약물(hash digest)이라 한다. 해쉬함수는 주어진 문서에 대하여 항상 유일한 출력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문서의 위변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 R. Caplehorn, *op. cit.*, p. 423.

결국 Rulebook이 BBL의 증빙기능을 인정하므로 모든 문서가 당사자간 진정성을 확인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3. BBL의 인도와 화물수령

Bolero시스템하에서는 양하항에서 화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종이선하증권은 없다. 그 대신 BBL을 인도하여야 한다. BBL의 인도(surrender)는 그 소지자가 전통적 선하증권과 같이 운송의 종료시 물품을 인도받기 위하여 운영절차의 운영규칙²¹⁾(Operational Rules)에 따라 운송인에게 BBL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BBL의 인도시기는 운영규칙에 따라 어느 한 당사자가 운송인이나 운송인에 의하여 지정된 BBL의 수령인에게 BBL을 인도한 것을 표시한 문서와 함께 발송한 때이다.

BBL이 인도되면 운송인은 양하항에서 물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당사자의 이름을 알게된다. 그 당사자는 BBL의 인도로 물리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송인은 BBL이 인도되었을 때 양하항에서 물품의 인도수령을 원하는 자가 지정된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조회할 필요가 있다.

IV. BBL과 관련된 다른 무역계약과 전자문서

Rulebook은 BBL의 양도에 따른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BBL과 함께 신용장거래에 수반되는 많은 무역서류의 전자화의 전제하에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BBL이 실무적으로 보편화 된다면 국제물품매매 거래의 이행과정에 개입되는 모든 당사자, 즉 수출자, 수입자, 은행, 운송회사, 보험회사, 포워딩회사 등이 Bolero Association Ltd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Bolero.net를 통하여 모든 거래가 수행될 것이다.

논자는 본장에서 이들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하여 무역거래에 개입하기 때문

21) Rulebook의 운영절차(Operating Procedures)에 관한 규칙으로 강행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Bolero규약집 1.1.(39))

에 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결제계약의 순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매매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이슬람국가 등이 아직도 전통적 서면요건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법규나 대부분의 국내법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은 인정하고 있다.

“UN통일매매법”(1980)에서도 “writing”의 정의에 전보나 텔레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전자문서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은 동법이 EDI의 본격적 사용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보나 텔레스를 전자문서로 확대하여 해석하는데는 결국 문제가 없으며, 전자문서도 “writing”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²²⁾ 동법을 제정한 UNCITRAL은 1996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하였다.²³⁾

또한 UNCITRAL의 “전자서명통일규칙초안”(Draft Uniform rules on Electronic Signature, 2000)에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매매당사자간 거래에서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인 INCOTERMS 2000도 서문에 BOLERO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²⁴⁾ 각 조건의 매도인의 의무 제8항에 “전자적 합의”(electronic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간의 합의 뿐만 아니라 무역관련자 모두의 다자간 합의가 Bolero Rulebook이기 때문에 Bolero 시스템에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이 Rulebook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²⁵⁾ 따라서 매매당사자가 Rulebook에 서명하면 “전자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에 대한 인도의 증빙서로 전자문서, 즉 BBL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UN통일매매법”的 보완법적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

22) J.O. Honna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3rd ed 1999, p. 130.

23)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1996); 이 모델법은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서요건(제6조), 서명(제7조), 증거적가치(제9조) 및 운송계약에 관한 행위(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4) INCOTERMS 2000, Introduction 19.

25) I.C.C. Guide to Incoterms 2000, p. 31.

되는 1994년의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에서도 “writing” 또는 “contract in writing”에 관하여 여러 곳에서 언급하면서²⁶⁾ 이것은 전보나 텔레스뿐만 아니라 기록(record)을 보호하는 다른 형태의 통신방법이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재생산될 수 있는 통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적 기록방법도 포함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법으로는, 1991년 제정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1991)에서 EDI방식에 의한 전자문서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거래 기본법”(1998)과 “전자서명법”(1999) 모두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운송계약

전통적 선하증권은 배서, 양도로 선하증권에 명기된 화물의 권리가 이전되지만 BBL의 경우 권리의 등록과 변경을 통하여 권리의 이전과 함께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바뀌게 된다. 전통적 선하증권의 지상약관이나 준거법이 되는 국제협약은 BBL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한 국제협약이 BBL에 삽입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협약의 내용과 BBL원문에 포함된 운송계약의 다른 조항이 상충될 경우 그러한 국제협약이 우선한다.²⁷⁾ 이러한 점에서는 BBL에 적용되는 국제규칙은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과 같다.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협약 가운데 “Hague Rules”이나 “Hague-Visby Rules”은 송하인이 요청한 경우 선하증권이 종이문서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지만 Bolero.net의 상황하에서 BBL을 사용하는 목적이 종이서류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하인이 종이문서의 선하증권발행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각종의 국제규칙이나 협약상의 “writing”的 개념이 “Electronic Message’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다.

1978년에 제정된 Hamburg Rules은 선하증권의 전자식 서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²⁸⁾ 1992년에 발효된 후 아직까지 널리 채택되지 않고 있는 실

26) UNIDROIT Principles Arts. 1.2, 2.9(2), 2.12, 2.17, 2.1(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Comment 4.)

27) Bolero 규약집 3.2.(4)

28) Hamburg Rules, Art.14(3); ther Signature on the bill of lading may be in

정이다.

한편 1992년에 제정된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TAD/ICC 규칙”(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은 준거법이 허용하면 복합운송서류를 EDI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⁹⁾

또한 1992년에 제정되어 150년간 유효했던 영국 “선하증권법(the Bills for Lading Act, 1855)”을 폐기시킨 해상물품운송법(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은 해상운송서류에 전통적인 선하증권외에 해상화물운송장과 선박인도지시서(ship's Delivery Order)를 포함시켰으나 운송서류의 발행과 배서 또는 양도에 전기통신수단이나 정보기술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³⁰⁾

우리나라의 경우도 “화물유통촉진법”에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 제12호).

3. 보험계약

CIF나 CIP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증권은 배서나 다른 관습적 방법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³¹⁾ 여기서 언급한 “관습적 방법”에 “전자적 서명방법”(electronic mode of signing)을 배제하기로 동의하는 당사자는 없을 것 같다. 또한 합의된 전자적 서명방법의 유효성과 강행성에 관하여 논쟁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³²⁾

비록 전자적 서명방법을 인정하는 입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라 하더라도 포괄보험증권에 관한 관습에서는 서면요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포괄보험증권의 경우 특별한 형식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포괄담보에서 발행되는 보험증명서는 서면과 같은 특별한 형식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적 방

handwriting, printed in facsimile, perforated, stamped, in symbols, or made by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ans….

29) 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2.6.

30)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1(5).

31) M.I.A.(1906) 제50조(3)항; A marine policy may be assigned by endorsement thereon or in other customary manner.

32) E.T.Taryea, "Dematerialisation of Insurance Documents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 A Need for Legislative Reform"(2000) 23(1) *UNSW Law Journal* 78.

법으로 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보험증명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³³⁾

4. 결제계약

본고의 결제계약은 L/C 베이스를 기준으로 볼 때 신용장의 문서요건에는 법률적 제한이 없다. 전자신용장은 SWIFT.net을 통하여 이미 발행·통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SURF도 개발중에 있다.³⁴⁾

UCP에서는 신용장의 전신통지를 규정하고³⁵⁾ 있다. 비록 UCP에서는 전자적 형태로 제시된 서류의 점검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이러한 문제는 신용장 문면에 적절한 문언을 삽입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국제무역의 주종을 이루는 L/C베이스의 경우 서류의 작성과 서명에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³⁶⁾ 신용장거래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 하는데는 장애가 없다고 생각된다.

5. 기타 서류

환어음은 화환추심(documentary collection)에 사용되며 이를 문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³⁷⁾

영국의 환어음법도 환어음을 "서면상의 무조건적 지시"(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1988년에 제정한 "국제환어음과 국제약속어음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에는 환어음 발행인의 서명에는 유플서명,

33) R. Caplehorn, *op. cit.* p.423.

34) SURF는 "Settlement Utility for Marketing Risk in Finance"의 약자로 SWIFT의 대안으로 Bolero에서 개발중에 있다.

35) UCP(500) 제11조.

36) UCP(500)제20조 (b)항.

37) Uniform Rules for Collection(1995)에는 화환추심(documentary collection)은 상업 서류가 첨부된 금융서류의 추심과 금융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상업서류의 추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d)항) Bills of Exchange Act, 1992, 제3조 (1)항.

FAX 또는 “이와 동등한 진정성이 있는 다른 방법”(equivalent authentication effected by any other means)이라고 규정하여 디지털서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³⁸⁾

이들 서류를 제외한 다른 무역관련서류 즉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또는 포장명세서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빙서류로 인정하는데 따른 법적 제한이 없다.

V. BBL의 실용화에 따른 문제점

1. 비용 문제

Bolero는 SWIFT에 의하여 운영되는 Central Data Registry를 통하여 전통적 종이선하증권의 기능을 수행한다.

SWIFT는 물품의 권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데이터를 등록하며 운송인으로부터 통지가 있으면 물품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에게 인수지시를 한다.

권리가 없는 당사자에게 인수지시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1년 365 일 하루 24시간 작동이 필요한 국제적 조직이다. Bolero에 가입하면 사용정도에 따라 매년 몇천달러에서 몇십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³⁹⁾ 모든 사용자들은 이러한 오류에 대한 책임한도를 건당 10만달러로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석유와 같은 화물을 취급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위의 책임한도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BBL은 물품의 운송중 매매가 이루어지는 Bulk cargo의 운송에 적절하다. 대부분의 정기선화물은 운송중에 매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적 기능은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시 담보기능을 위하여 필요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BBL의 운영을 위한 비용부담을 Bulk Cargo의 화주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BBL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선화물도 BBL을

3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 제5조 (k)항.

39) FITA <http://www.fita.org>.

이용하여야 할 입장이다.⁴⁰⁾ BAL 회원들에게 BBL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 사용자는 전자문서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요구받게 되고 이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BBL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위에 언급한 가입비와 운영비를 분산하여 부담을 줄이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 Chase Manhattan이 폐지한 Seadocs system도 비용 때문에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했었다.

2. 참여회사의 제한

앞서의 논의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BAL의 회원임을 전제로 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도단계에 참여한 회사는 큰 기업과 대형 은행이다. 예를 들면 Commerzbank, Santoil, mitsui & Co. Ltd, Sanwa Bank, Marubemi, Citibank 등이다.⁴¹⁾

우리나라에서는 한빛은행과 외환은행 삼성전자 등이 가입했다.

그렇지만 가입비용이 비싸고 복잡하여 무역유관기관, 즉, 운송회사, 보험회사, 은행, 수출입상, 운송주선인 등이 참여하여야 그 운용이 가능하다. 수출입상이 당분간 BBL보다 간편하고 값싼 Waybill을 선호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Waybill은 종이로도 전자식으로도 발행이 가능하며 BBL이 운영되는 경우처럼 Control Data Registry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운용이 간편하다.

권리등록방법에 의한 BBL의 유통방법이 폐쇄된 회원들 간에만 운영된다면 비회원사가 관련된 국제거래는 또 다시 전통적 종이선하증권으로 회귀될 수밖에 없다는 불리한 면이 있다.⁴²⁾

3. BBL과 종이문서의 병행

모든 수출입상과 무역유관 기관들이 Bolero에 가입하기까지 전통적인 서류

40) J.W. Richardson, "Key to International E-Commerce,"(www.icmonitor.com/icnjan2000.pdf).

41) <http://www.bolero.net/decision/casestudies>.

42) L. D'Arcy, C. Murry, B. Cleave, *Schmithoff's Export Trade*, 10th ed., Sweet & Maxwell, 2000, p. 697.

거래와 전자문서의 병행거래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과도기가 너무 오래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UCP500 제24조에서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1992년 영국의 COGSA가 Sea Waybill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Bulk Cargo가 아닌 경우 운송중에 실제 유통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Sea Waybill과의 병행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논자의 견해는 지금 이미 대서양권에서는 종이로 된 Sea Waybill이 전통적 선하증권과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자식 Sea Waybill이 BBL과 병행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4. Rulebook의 적용 및 효력의 한계

BBL의 사용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규율하는 Rulebook은 선하증권이 종이 형태에서 전자적 메시지로 전환되어짐으로 인해 기존에 발생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상황발생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내포하고 있다. 즉, Rulebook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실제 일어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예측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예측치 못한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의문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법적 공백을 막겠다는 당초의 목적은 실패하는 셈이다. 따라서 상업적 실용화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Rulebook은 이에 서명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서명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일대일 교환약정의 체결이 필요하게 된다. 즉, 하나의 다자간 교환약정으로는 BBL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모든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다자간 교환약정인 Rulebook에 서명한 모든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와의 관계에 대비하여 별도의 교환약정을 준비해야 하고 이는 다자간 교환약정의 존재의의를 희석시키는 결과가 된다.

5. 전자식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의 문제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⁴³⁾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⁴⁴⁾ 이것을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이라 한다. 즉, 운송물의 매매 또는 입질을 위하여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을 현실로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증권의 취득자는 매매의 경우에는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입질의 경우에는 질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하증권의 교부는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증권소지인은 운송물 위의 물권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은 물권적 유가증권이라고도 한다.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운송중에 송화인 등이 운송물의 양도, 입질 등의 물권적 처분을 할 경우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전자식 선하증권이 물권적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물품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적 기능과 유통성이 전자적 메시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실상 이 문제는 전자식 선하증권의 실용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해묵은 주제로⁴⁵⁾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왔다.

본 논문의 3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L은 Bolero의 권리등록시스템에 의해 권리의 이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 방법상에서 컴퓨터의 기록을 물권적 유가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자 메시지의 전달을 통해 권리의 이전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각국의 국내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요컨대,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的 적용과 “Rulebook”을 통한 당사자의 합의를 각국의 입법에서 인정하고, 이를 통해 BBL이 복잡하고 다양한 각국의 국내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43) 지시식일 경우에는 연속된 배서의 최후의 피배서인, 무기명식인 경우에는 소지인.

44) 商法 第 820 條, 第 133 條.

45) 예컨대 미국에서 활동중인 Kozolchyk교수나 독일의 Zahn교수는 제정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서류가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유통가능 권리증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Boris Kozolchyk, "Evolution and Present State of the Ocean Bill of Lading from a Banking Law Perspective,"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23, No. 2, (April 1992), p. 240.).

VII. 결 론

BBL이 사용되면 전통적 무역거래의 서류전달지연이 줄어들어 거래시간이 단축되고 서류의 발급과 발송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가 큰 것은 자명하다. 또한 전통적 서류거래에서 서류작성과 입력 등에서 발생되는 오류나 사기를 막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Bolero의 사용이 처음 시작될 때는 대형회사들이 주축이 되며 중소기업은 대형회사의 고객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시초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부담하는 비용과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시스템이 일반화되기 어려운 점은 비용측면과 함께 이용 방법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이미 대서양권에서는 전통적 선하증권 대신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해상화물운송장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된다.

BBL의 사용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운송회사, 보험회사, 은행, 운송주선인 및 수출입상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 업체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국의 상이한 법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한 Rulebook을 보다 정교하고 현실감있게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그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이에 서명하지 않은 당사자와의 사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리의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무역분야에서 어떤 현상이 무역관습의 지위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알고 있다. BBL 역시 아직은 하나의 현상에 머무르고 있으며, 무역관습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参考文献

- Bonell, M. J.,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2nd ed.,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1997.
- Burnett, R., *Law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2nd ed., The Federation Press, Update-Feb. 2001.
- D'Arcy, L., Murry, C., Cleave, B., *Schmithoff's Export Trade*, 10th ed., Sweet & Maxwell, 2000.
- Honnald, J.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3rd ed 1999.
- Ramberg, J., *ICC Guide to Incoterms 2000*, ICC, 2000.
- Yiannopoulos, A.N., *Ocean Bills of Lading: Traditional Forms, Substitutes, and EDI System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 Caphehorn, R., "Bolero.net-The Global Electronic Commerce Solution for International Trade,"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1999. Nov.
- Gripman, D. L., "Electronic Document Certification ; A primer on the technology behind digital signatures," *Journal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7 No.3 (1999)
- Jones, D., "Bills of Lading Go Electronic," (1994) 12 *Banking World* 38.
- Kozolchyk, Boris, "Evolution and Present State of the Ocean Bill of Lading from a Banking Law Perspective,"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23, No. 2, (April 1992).
- Kruse, 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Swedish Club Letter*, 1999. 3, p.18.
- Richardson, J. W., "Key to International E-Commerce," (www.icmonitor.com/icnjan2000.pdf)
- Taryea, E. T., "Dematerialisation of Insurance Documents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 A Need for Legislative Reform"(2000) 23(1) *UNSW Law Journal* 78.
- Bolero International, *Bolero RuleBook*, 1st ed.,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Bolero Bill of Lading(BBL)

Oh, Won Suk

To accomplish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via the Internet, the most serious dilemma is the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The BBL is a secure and effective electronic commerce framework for the replacement of traditional paper documents by electronic messages via the Internet providing significant benefits in terms of cost savings, improved logistics and reduced errors in documentation.

The most important legal obstacles in the BBL are how to secure authenticity, non-repudiation and message integrity as well as the status of negotiability equivalent to paper B/L. These kinds of functions may be carried out through the electronic title registry of the Bolero International Limited. The technical structure is supported contractually by the Bolero Rulebook. And other documents except B/L can be made out without any legal or technical problems.

What are the handicaps of the BBL in its practical use at this time? I can summarize the current and expected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fee to join Bolero Association Limited is burdensome to sellers, buyers and trade related organizations all over the world.

Second, the liability in errors or defaults in operating central data registry of Bolero International Limited is limited to U.S.\$100,000. The amount is not sufficient to the many bulk cargo owners to cover the damages.

Third, businessmen are used to traditional paper documents; therefore it takes much time for them to change their customs and practices. So the BBL and traditional papers would be used simultaneously for the time

being.

Finally, it is very important to incorporate the Rulebook, a multilateral contract binding on all users signed, in each domestic law, which will accomplish the uniform law basis.

Keywords : Bolero Bill of Lading